



Controller John Chiang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사망한 소유자의 청구를 대행하는 상속자가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필요한 증거 서류**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상속자로서 청구하는 경우, 1~5 항의 서류 및 6~15 항에서 요청된 해당 증거 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된 소유자가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에 대하여 수탁자나 개인 대리인,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인으로서 청구하는 경우, 1A, 2, 3A, 4 항의 서류 및 6~15 항에서 요청된 해당 증거 서류 일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0 미만 현금 또는 고인의 것인 수표나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채권, 이자표와 같은 현금화하지 않은 유통 증권이 미청구 재산부(Unclaimed Property Division)(UPD)로 이관되었지만, 저희 웹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 신청을 하기 전에 (800) 992-4647 로 회계감사관실로 연락하시면 해당 재산이 저희에게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유통 증권을 저희가 조사하려면 청구인은 청구 신청을 하기 전에 현금화하지 않은 해당 유통 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금화하지 않은 해당 유통 증권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확인되면 청구 시 “원본” 증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0 미만의 현금이 저희에게 있는 것이 확인되면 청구 시 6B 항에서 요청된 증거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작성 및 서명된 청구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 위임장은 받지 않습니다.)

A. 다음 경우 청구 확인서는 반드시 공증된 것이어야 합니다.

- 1) 청구 가치가 \$1,000 이상인 경우
- 2)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청구하는 경우
 - a) 주식
 - b) 뮤추얼 펀드
 - c) 채권
 - d) 사채
- 3) 대여금고 내용물을 청구하는 경우

B. 같은 재산을 청구하는 청구인이 복수이면 각 청구인은 청구 확인서에 반드시 서명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인들이 같은 증거 서류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모든 청구 확인서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각각 따로 보낸다면 필요한 증거 서류를 청구 확인서마다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2) 각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재산의 비율은 청구서와 함께 제공된 정보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 청구 시, 사망한 소유자의 최종 사망 증명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A.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한 소유자의 사망 증명서는 해당 카운티 기록 사무소에 연락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카운티 기록 사무소 웹사이트 검색:
<http://www.cdph.ca.gov/certlic/birthdeathmar/Pages/CountyRecorderOffice.aspx>
- 2) 도시가 소재한 카운티 검색:
<http://www.csac.counties.org/default.asp?id=49>

B. 캘리포니아주 이외의 주에서 사망한 소유자의 경우, 해당 주의 인구통계 사무소(Office of Vital Records)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정 주의 인구통계 사무소 웹사이트 검색:

<http://www.cdc.gov/nchs/w2w.htm>



사망한 소유자의 청구를 대행하는 상속자가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필요한 증거 서류 (계속)

주: '조사 중'인 사망 증명서는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망 증명서의 모든 페이지를 영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망 증명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공인 번역사에 의하여 반드시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3. 청구인의 현재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 있는 주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사본 대신 청구인의 이름, 운전면허증 번호, 운전면허 만료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진술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도 인정됩니다.)

A. 현재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이 없으면 아래에 예시한 서류도 허용됩니다.

- 1) 군인 신분증
- 2) 여권
- 3) 학생증

B. 청구인의 현재 이름이 신탁이나 유언장, '상속인 일람표'(Table of Heirship)에 나와 있는 이름과 다르다면 아래에 예시한 청구인 이름 변경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결혼 증명서
- 2) 법원 서류

4. 사망한 소유자의 사회보장번호(SSN)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사망 증명서
- B. 사회보장 카드
- C. 소득 신고서
- D. 급여 명세서(전체 SSN 이 기재된 것에 한함)

5. 청구인의 SSN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의 SSN 증명도 있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A. 사회보장 카드
- B. 소득 신고서
- C. 급여 명세서(전체 SSN 이 기재된 것에 한함)

주: 청구인이 외국인이며 SSN 이 없다면 미연방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IRS) 양식 번호 W-8 BEN 을 제출하여 외국인 지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w8ben.pdf> W-8 BEN 대신 '개인 납세자 ID 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증명도 받습니다.

6. 소유자와 재산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정보가 SSN 이라고 해도 해당 재산이 UPD 로 이관될 때 SSN 이 저희에게 제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A 또는 그 아래 B 에 기재된 증거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서류라도 가지고 계시면 신청 시 제출하셔서 청구 처리 지연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A 와 B 중 해당 서류

A. 사망한 소유자가 미청구 재산을 이관한 회사가 보고한 주소에서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 서류. 저희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재산을 발견한 경우 이 주소가 재산 내용 화면에 표시됩니다. 청구 재산에 대하여 보고된 주소를 찾을 수 없으면 (800) 992-4647 로 전화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사망 증명서
- 2) 급여 명세서(원본 필요)



사망한 소유자의 청구를 대행하는 상속자가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필요한 증거 서류 (계속)

- 3) 주택담보대출 서류
- 4) 전화 또는 유틸리티 청구서(원본 필요)
- 5) 은행 또는 신용카드 계좌 명세서(원본 필요)
- 6) 결혼 또는 출생 증명서

또는

B. 미청구 재산을 보고한 회사에 사망한 소유자의 계좌가 있었던 사실 또는 사망한 소유자가 그 회사와 거래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서류. 이런 서류는 반드시 청구 재산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은행 계좌 명세서 원본(미청구 재산을 보고한 은행 발행)
- 2) 주권 또는 주식 명세서 원본(미청구 재산을 보고한 투자 회사 발행)
- 3) 인보이스 또는 영수증 원본(보고 회사 발행, 사망한 소유자의 이름 표기)
- 4) 금고 내용물 목록(해당 재산이 대여금고의 내용물인 경우)

7. 청구인이 수표나 자기앞 수표, 여행자 수표, 머니 오더, 채권, 이자표 같은 유통 증권을 청구하고 해당 자금이 저희에게 있음을 저희가 확인한 경우, 청구인은 청구 시 “원본” 증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본” 증서가 없는 경우 UPD 에 (800) 992-4647 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게 됩니다.

8. 광물 이권(권리 또는 로열티)에 대한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 보고된 재산의 소유자가 해당 이권이 발행된 시점에 그 이권을 소유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서류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청구인이 대여 금고의 내용물을 청구하고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그 대여 금고의 소유자가 달리 또 있다고 표시되는 경우, 각 소유자는 해당 대여 금고의 내용물을 청구인에게 방출하는 것을 승인하는 재산 방출 양식과 더불어 반드시 청구 확인서를 작성, 서명 및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 소유자의 청구 확인서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현재 운전면허증이나 사진 있는 주정부 발급 신분증 사본 및 SSN 증명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대여 금고의 다른 소유자가 사망했다면 사망 증명서를 청구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 방출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10.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청구인의 양육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재산관리자/후견인 지정서
- 2) 재산관리자/후견인의 최근 소득 신고서 사본(미성년자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된 경우)

B. 해당 미성년자의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출생 증명서
- 2) 학생증(미성년자의 나이나 생년월일이 표시된 경우)

모든 청구의 경우: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 현황을 묘사하는 항목의 번호를 아래에서 선택하여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상기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중요한 알림: 이 청구가 \$100,000 이상 되는 가치를 지닌 캘리포니아주 유산에 대한 것이고 그 유산이 신탁의 일부가 아니라면, 저희는 청구인이 법원에서 유언검인을 개시할 때까지 청구 건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 유언검인법 제 13150 조 이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한 소유자의 청구를 대행하는 상속자가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필요한 증거 서류 (계속)

11.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이 현재 유언검인 중(미결 유언검인)이라면,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은 유언집행자/유산관리인이 관리하는 해당 유산에 대하여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A. 법원 서기가 확인하고 청구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날짜 소인이 찍힌 ‘유언 집행장’(Letters Testamentary)(법원이 임명한 유언집행자/유산관리인 표기)
- B. 해당 유산의 ‘연방 사업주 ID 번호’(FEIN)가 있는 서류.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최근 소득 신고서 사본(반드시 청구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
 - 2) FEIN 부여 사실이 표시된 IRS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FEIN 확인 페이지
 - 3) FEIN 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IRS 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FEIN “유언 집행장”(서신의 날짜가 3년 미만의 것)
 - 4) 받을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ID 번호 신청서”(Application for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라는 제목의 SS-4 신청서 및 “납세자 ID 번호 및 증명서 요청”(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이라는 제목의 W-9 신청서

주: 해당 유산에 FEIN 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IRS SS-4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양식은 IRS 웹사이트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 으로 연락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12.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이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를 완료한 경우(완결 유언검인),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은 지급금 수령 자격자를 확인하는 ‘최종 유산 분배 판결’(Final Decree of Distribution)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A.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에 대하여 법원이 명령하고 주재 판사가 서명한 ‘최종 유산 분배 판결’의 완전한 사본
 - B. ‘최종 유산 분배 판결’에 기명된 수혜자가 신탁이라면, 아래 항목 14 에 해당하는 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 ‘최종 유산 분배 판결’ 청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13. 사망한 소유자가 유언장을 남겼고 유산이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은 유언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유언장의 유언집행자/유산관리인이 그 유언장의 수혜자가 아닌 한 지급은 유언장의 유언집행자/유산관리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A. 사망한 소유자가 서명한 유언장의 완전한 사본. 해당 시 유언장 수정 내용 포함.
- B. 유언장에 기명된 수혜자가 신탁이라면, 아래 항목 14 에 해당하는 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C. 작성하고 서명한 ‘유언검인법 제 13101 조에 의한 선언서’(Declaration under Probate Code, Section 13101)(유산의 가치가 \$100,000 미만이므로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됨을 선언하는 양식). 이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주: 회계감사관실이 청구 재산의 가치를 \$100,000 이상으로 판정하면 해당 유산이 법원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이미 거쳤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될 때까지 해당 청구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14. 신탁이라면,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은 신탁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한 소유자의 청구를 대행하는 상속자가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필요한 증거 서류 (계속)

- A. 사망한 소유자가 서명한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완전한 유언장 사본
- B. 사망한 소유자가 서명한 신탁계약의 완전한 사본. 해당 시 수정 내용 포함. (주: 신탁계약 대신 신탁 증명서 및 초록을 제출하면 받지 않습니다)
- C. 해당 신탁의 FEIN 이 기재된 증거 서류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최근 소득 신고서 사본(반드시 청구 확인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것)
 - 2) FEIN 부여 사실이 표시된 IRS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FEIN 확인 페이지
 - 3) FEIN 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IRS 가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FEIN “유언 집행장”(서신의 날짜가 3년 미만의 것)
 - 4) 받을 수 없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ID 번호 신청서”라는 제목의 IRS SS-4 신청서 및 “납세자 ID 번호 및 증명서 요청”이라는 제목의 IRS W-9 신청서
주: 해당 신탁에 FEIN 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IRS 양식 SS-4 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 양식은 IRS 웹사이트 www.irs.gov 를 방문하거나 (800) 829-4933 으로 연락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 D. 해당 신탁의 자산이 배분된 경우, 신탁의 최종 소득 신고서 사본. 지명 수익자 전원이 기재된 스케줄 K 및 각 수익자에 대한 배분 명세 포함.

15. 사망한 소유자의 유산에 신탁이나 유언장이 없고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된 경우,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은 캘리포니아 유언검인법 제 6401 조에서 찾을 수 있는 유언장 없는 상속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증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A. 작성하고 공증 받은 ‘상속인 일람표’. 이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 B. 작성하고 서명한 ‘유언검인법 제 13101 조에 의한 선언서’(해당 유산이 \$100,000 미만이며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아도 됨을 선언하는 서류). 이 양식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주: 회계감사관실이 청구 재산의 가치를 \$100,000 이상으로 판정하면, 해당 유산이 유언검인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이미 거쳤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제출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청구는 처리될 수 없습니다.
- C. 청구인과 사망한 소유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증거 서류. 제출 가능한 서류의 예:
 - 1) 결혼 증명서
 - 2) 출생 증명서(청구인의 현재 이름이 출생 증명서의 이름과 다르다면 이름 변경 확인 서류(예: 법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상속인 일람표: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유언검인법 제 13101 조에 의한 선언서: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재산 방출 양식: http://www.sco.ca.gov/upd_form_claim.html

모든 서류를 보내실 곳: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Controller John Chiang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사망한 소유자의 청구를 대행하는 상속자가 신청할 때
주의할 사항 및 필요한 증거 서류 (계속)

Sacramento, CA 94250-5873

이 청구 시 주의 사항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 서류에 관하여 기타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1
(800) 992-4647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